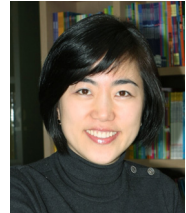


국외 입양과 아동의 이주



한서승희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archpeer@yonsei.ac.kr>



국문요약

국외입양에 있어서 입양인은 국가간의 이주를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입양은 아동이 출생 국가뿐만 아니라 원가족으로 부터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이탈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성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간 입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사점을 던져준다.

법적 입양의 세 주체인 입양인, 입양 부모 그리고 입양기관 가운데 입양절차에 있어서 아동은 그들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자에 의해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이동은 '이동(migration)'이 아닌 '이탈(displacement)'로 보아야 한다. '이동'이 아닌 '이탈'은 입양이 권력의 미끄러짐 속에서 획득하지 못한 국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자 즉,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분류된 이들은 휴머니즘의 실천이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입양되어 왔다. 국민국가 성원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져 개인(입양부모)의 윤리에 운명을 위탁하게 된다.

국가간의 입양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정책과 국제관계 그리고 종교와 시대적 담론과 같은 복잡 미묘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실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입양인의 존재는 비가시화되어 왔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할 기회가 배제되고 비가시화 된 입양인이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진지하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 입양, 국외입양, 이주, 주체, 이탈

I. 들어가는 말

K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을 갔다. 20대에 네덜란드를 떠나 현재는 덴마크에 거주 중이며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남편은 유대인으로 결혼하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K씨에게 누군가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는다면 K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유엔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UNPD)에 따르면(국제이민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13년에 이민자 수가 2억 32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¹⁾ 이들은 65억에 달하는 세계인구의 약 3%를 차지한다. 1945년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장된 이주 현상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물론 정치적, 문화적 변화로 더욱 용이해 졌다.²⁾

국가간의 이주를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개인은 주체적 판단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주 이외의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http://goo.gl/5duCLG>

2)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이주의 시대』 p.26

또한 선택의 여부가 원초적으로 배제 된 경우도 있다. 외부적으로는 주체적으로 이주의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요인이 이주의 직,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과 송출국과 수용국의 국가관계와 같이 다양한 이주의 형태와 요인들이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복잡한 층위의 맥락에서 이주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주의 종류를 분류하여 보면 형태에 따라 이주는 노동이주, 학업이주, 결혼이주, 은퇴이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요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이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전쟁, 식민지 등에 의한 강제이주, 생존을 위한 이주, 등 이주의 요인, 형태, 대상 등에 따른 구분은 매우 세밀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주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과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이주 당사자임에도 이주의 주체로 설명되지 않고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해석만이 존재한다. 성인의 이동과는 달리 아동의 이동은 스스로가 이동을 실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의 이동이 주체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동의 대부분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모나 친인척 혹은 제 3자인 대리인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간 입양은 국민 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취득되는 아동의 출생국 국적을 임의로 소멸시키고 이동할 나라 즉 수용국에서 새로운 국적 획득과정을 거치게 한다. 여기서 국적의 임의적 소멸이란 시민에게 주어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동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국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아동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입양은 대부분 영유아 때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특별히 개인의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양은 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이탈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단지 성인들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더욱이 입양 당사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도 주어진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은 국가간 입양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나 다양한 층위가 있는 국가간 입양 연구에 있어서 아동의 주체성이나 아동의 이동이라는 관점의 분석은 드물었다. 때문에 입양 안에서 비가시화되는 아동의 주체성 및 외부자에 의한 이동³⁾으로서의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3) 본국에서 타국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 '이주' 혹은 '이동'보다 영어의 'displacement'가 적절한 용어이다. 이는 아동이 이동의 주체이면서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타국으로 위치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것이다.

II. 세계적 입양의 흐름 : 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아동 이동의 역사

2차 세계대전은 국가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적 관계와 이해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교류의 확장은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동이 다른 국가로 유입이 되는데 한층 더 수월한 역할을 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도 입양은 있었지만 국가를 넘어 다른 인종에게 입양 되는 것은 종전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아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전쟁 고아들은 각 나라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다. 사회 체제를 재정비해야 하는 국가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은 더욱 요원했고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돈독해진 국가간 상호 관계와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양육 부담을 정책적으로 해외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본격화된 국외입양은 전쟁의 패전국이나 경제적 재건이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한국, 필리핀, 홍콩과 태국 등이 초기 국외입양의 송출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⁴⁾ 이 나라들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재건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로 시작하였지만 이중 몇 개의 국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실상 입양 대상자를 고아에서 시설에 있는 아동⁵⁾으로 대체 시킴으로써 국외입양 송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전후 국외입양을 추진해 오다가 70년대 초반에 국외입양의 송출국 명단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1980년대 최고 8000여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점이다.

하워드 아트스테인과 리타 사이몬(Howard Altstein, Rita J. Simon)에 의하면 국외입양 송출과 수용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내전이나 국제적인

4) Christopher Bagley 외, 1993, *Inter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s*, p. 135.

5) 전쟁고아와 같은 경우 부모가 모두 전쟁의 영향으로 사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한 아동일 수도 있지만 부모 둘 다 혹은 한 명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양육을 잠시/영속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때문에 고아에서 시설에 있는 아동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까지 입양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치렀고 수용국과 송출국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기관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Haiti)와 일본의 경우 아이티에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후 미국의 여러 단체(특히 종교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천명 이상의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된 반면 일본은 현재까지도 국가적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국외 입양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2011년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도 수많은 사상자와 고아가 발생했지만 국외입양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이 국외입양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하워드 아트스테인과 리타 사이몬이 한 것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자리에 있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 고아로 국외입양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 가장 많은 아동을 국외로 보냈고 경제가 성장한 지금까지도 입양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사회적 요건을 넘어 국외입양은 그 사회의 문화적 요소가 더욱 깊이 반영된 결과라 말할 수 있다(한국의 사례는 이후 더욱 논의를 깊이 할 것이다.)⁶⁾

한편 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입양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전문화되면서 국외입양이 더욱 가속화 되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최소한 50만 명의 아동이 각 나라로 이주⁷⁾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국외입양의 흐름은 전쟁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 후 20년간 아시아가 주요 송출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다시 남미가 입양 송출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잠시 남미와 아프리카가 떠오르는 입양 송출국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아시아는 송출국에서 굳건한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대륙별로 봤을 때 아시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나 중국이 새로운 입양 송출국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에 국가간 입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17만 명의 아동이 다른 국가로 입양된 것을 알 수 있다.⁸⁾ 이는 전 세계 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이주에 약 1/3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국가간 입양은 주로

-
- 6) 한국전쟁이 한국의 해외입양을 촉발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해외로 입양을 간 아동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전쟁 직후 보다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입양시켰다. 이는 전쟁이 해외입양을 명분을 제시했을 뿐 입양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킨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입양으로서의 아동의 이주는 성인의 이동과는 달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의 대리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다. 국가간 입양의 경우 특별히 아동의 원가족과의 단절과 출생국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이주는 'displacement'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의는 이 글의 후반부에 더욱 전개될 것이다.
 - 8) 한국의 국외입양관련 단체들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를 20만 명으로 추정한다.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입양된 아동의 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만 명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근거로 16만 명으로 표기한다.

전쟁고아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고아보다 부모에 의해 장·단기 양육이 보류된 아동도 고아의 반열에 서 입양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국가간 맺고 있는 <헤이그국제아동인권협약>에서는 국가간 입양은 가장 최후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입양의 대상이 반드시 ‘고아’이어야 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양육에 책임을 지는 것이 최우선적 해결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양육을 입양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났다. 이것은 ‘고아’가 아닌 아동이 입양되는 것으로 스스로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설에 있는 아동은 실제적 고아라기 보다는 고아의 신분을 입은 잠정적 양육 보류 상태에 있는 아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이 무난히 입양으로 연결되는데는 입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체계적 조직을 갖추게 된 전문화된 사회복지기관이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국가간 이동의 편의성이 입양을 촉진시키기는 하였지만 입양 송출국을 살펴보면 이는 자본의 흐름과 그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수용국들은 주로 서구사회에 집중되어 있고⁹⁾ 송출국들은 그 서구사회를 둘러싼 아시아,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서구사회의 주변국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입양이 휴머니티의 실천이라는 담론의 이면에 중심부와 주변부의 착취구조에서 아동이 하나의 객체로 설정되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경제적 보상(입양비용)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한 국가에서 더 낮은 수준의 국가의 아동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불된다.¹⁰⁾ 그렇지만 입양은 단순한 소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만 입양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국가간 협약에 따르면 ‘고아’만이 입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한국의 국가간 입양의 약 90%가 미혼모의 자녀인 것을 보면(이것은 실제로 아동이 ‘고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입양 송출의 원인으로 그 문화적 요소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입양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사회, (종교를 포함한)문화적 습성과 그것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토대를 근간으로 한 복지체제구조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연결고리는 국가간의 친밀성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한 미국과 스페인 가운데 송출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9) 미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으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국 모두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10) 미국의 입양 전문잡지 '입양 가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평균 3만1천687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가운데 입양 준비금(3천650달러)과 여행 등 기타 경비(6천160달러)를 제외한 수수료는 2만1천877달러다. (출처: <http://goo.gl/OMwBFG>)

미국에만 아동을 입양 보내왔고 스페인에는 아동을 입양 보내지 않았다. 스페인도 매년 3,000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의 형태로 유입하였지만, 한국과의 국가간 입양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의 입양기관이나 국가간 친밀성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용국과 송출국 사이의 잠재되어 있는 특정한 요소가 수용과 송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송출국은 대부분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로, 국가간 아동의 이동은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아이들이 이동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아이를 생산하는 쪽은 가난한 나라이고 그 아이를 소비하는 쪽은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도식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은 대략 35개의 송출국¹¹⁾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서있지만 현재까지 송출국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약 7년간 아동의 입양은 아프리카는 13,562명(약 6.6%), 남미는 39,225명(약 19.2%), 유럽(주로 동유럽)은 50,651명(약 24.9%) 그리고 아시아는 99,970명(약 49.1%)를 차지하였다. 아시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중국이 전체 입양아동의 이동에 약 3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로 입양아동수(송출국 중심)로 본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국가간 입양이 5배 높다. 현재도 국가간 입양에서 아동의 이동은 아동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양을 하는(수용하는)국가와 입양을 보내는(송출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아동은 국가간 이동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타자화되어 초국가적 입양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Ⅲ. 입양인의 이주(migration)와 이동(displacement)

입양인 이주민에 속하는가? UN의 정의에 따르면 이주자의 개념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12개월 이상 특정 국가에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김현미, 2014). 한국은 다른 국가의 국적 취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동포’로 상정한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이란 무엇인가? 즉, ‘한국사람으로 지칭되는 자의 피를 타고 난 자’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인종이 함께 사는 한국땅에서 한민족이 누구를

11) 대륙 별로는 남미 7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유럽 14개국

말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만 ‘한민족 혈통’도 그 대상에 따라 범위가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한민족 혈통’으로 분리되고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입양인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마땅히 취득되어야 할 시민성이 포기된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이주가 강제된 자’ 혹은 ‘이주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성인이 되어 국가가 다시 관리의 대상으로 재범주화 한 것이다.

국적의 한계를 넘어 한국 땅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의 이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migration’이다. 이것의 라틴 어원은 ‘migrātus’로 ‘떠남’ 혹은 ‘사라짐’과 같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장소의 이동 혹은 한 장소에서의 떠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이동하는 실천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그 자체만으로 해석을 제한함으로써 이동하는 주체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소의 해석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그러나 ‘displacement’는 ‘강제적 추방이나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동의 실천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내포한다. 그것이 강압적이었던 설득에 의한 강제였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박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입양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동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국외로 나간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주의 ‘migration’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탈의 의미가 가미된 ‘displacement’가 그 현상과 과정을 이해했을 때 더욱 적절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박탈된 ‘장소’는 입양인들의 상상력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닿아보지 못한 장소와 꺾어보지 시간은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자문하게 한다. 특별히 다른 인종으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아동이 단순히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이동하는 ‘장소의 이동’으로 보기 보다는 서구 사회에서 법적 자국민이지만 동양적인 외모를 가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는 ‘타자로서의 내부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사회에 의해 ‘동포’로 호명되어 또 다른 의미의 ‘타자로서의 내부자’의 위치를 갖게 된다.

IV.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

2010년 10월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을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가 국회에서 있었다. 1부터 20만까지의 숫자를 도장으로 찍어 그 번호표로 터널을 만드는 퍼포먼스였다. 이 하나하나의 숫자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국외로 입양된 한국입양인 20만 명을 상징한다.

그들은 생모/부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이름 대신 숫자로 호명되고 기록되어 국외로 입양된다. 그들의 파일에 기록되는 이 숫자는 이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뿌리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숫자이다. 이렇게 약한 뿌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외입양은 세계 14개국 등으로 보내져 왔고 현재까지 여전히 보내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개인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고아원이 세워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이념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연합군의 힘을 빌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는 10만여 명에 이른다(Cho, 2008: 방인식, 2013 재인용).¹²⁾ 당시 매우 강력한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이 외국의 남성과의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들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때문에 초기 시설에는 고아와 혼혈아동이 주를 이뤘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모든 인프라가 재정비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원조와 선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고아원은 꼭 필요한 요소를 채워주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매년 2억 달러를 원조하며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간섭하였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한국사회에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상태에 있었고 소련은 미국을 비방하는데 있어서 ‘혼혈’ 문제를 들먹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혼혈아를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로 입양하는 것을 반공산주의 운동의 일부로 생각했다(방인식, 2013. 75). 서구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은 당연히 자신들의 인맥과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서구사회로 아동입양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추진을 배경으로 휴머니즘을 실천한 것이다. 1952년 10월에 한국정부는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였다. 초창이 ‘고아와 동네에서 배척된 ‘혼혈아’를 대상으로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및 이후에 원조를 해주었던 북유럽 국가들과 전쟁기간 동안 한국을 도왔던 서양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아동의 수용국으로 고착화 되는 동시에 혼혈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1954년 ‘모든 혼혈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두교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국가간 입양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¹³⁾

한국은 14개국 이상으로 아동을 입양보내왔고 미국이 가장 많은 한국아동을 수용한 국가이다. 미국으로의 입양이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등록은 1953년 미국 예수 재림교(American Seventh Day Adventists)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전쟁으

12) 방인식, 2013. “토마스 클레멘트의 입양 내러티브를 통해 인생 되돌아보기”『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 박경태(2013). “사라지는 혼혈인”『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오월의 봄

로 발생하게 된 고아들을 위해 기독교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s Fund)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역시 고아원과 프로그램을 설립, 지원했다. 또한 1954년 월드비전(World Vision)은 한국전쟁 혼혈고아들의 참상에 대하여 알리는 <Others sheep>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미국 전역에 알렸다. 이때 근본주의 기독교인이었던 해리와 베르타 홀트 부부는 한국아동 입양을 신의 명령으로 수렴하여 8명을 입양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결국 독립된 입양기관을 세우게 되었다.¹⁴⁾ 한국의 해외 입양을 담당하는 3개의 기관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홀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미국은 1950년대 베이비 붐이 일어 아이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져갔다. 냉전시국 국가적 차원에서 혼혈아동이나 전쟁으로 복구가 필요한 국가의 아동을 국가 해계모니의 유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유입시키기도 하였지만 전쟁 후 불임문제의 증가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안정된 가정과 '정상가족'의 이상을 이루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강력한 근본주의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문화적 배경은 기독교 배경을 안고 세워진 한국의 고아원과의 밀접한 친밀성은 입양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9년까지 입양인들의 대부분은 혼혈로 전체 입양의 70~90%를 차지했다(이삼돌 2008, 86). 여권발급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지 않은 시기 정부의 비호와 지지 아래 혼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간 입양은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정서와 만나면서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물러나면서 국외입양에 혼혈아동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아동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아동의 입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리고 군사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1961년 9월 30일에 최초의 <고아입양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국가간 입양 시스템이 성립되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의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시점은 한국의 입양 역사의 2기에 해당한다.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이 아동복지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화벌이를 할 수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그들을 국외입양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사실상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아원은 국외입양으로 인한 외화벌이가 그들의 자구책의 하나였을 수 있다. 더불어 입양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혈아동'을 한국사회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담론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53년부터

14)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2008).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p.84

1969년 사이에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9065명으로 이중 혼혈아동은 절반인 4538명이다. 초기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한 혼혈아동의 입양은 1953년 전체 공식 입양인 59명 가운데 52명(88%)으로 시작해 공식 집계가 1973년 전체 4,688명 가운데 154명(3%)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한국정부는 아동의 국외입양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오히려 인구 억제 및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입양을 더욱 확장시켜나갔다. 1962년 해외이주법을 통해 광부와 간호사 등의 노동자를 독일, 북유럽, 남아메리카로 보냈으며,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서구인들과의 결혼으로 해외로 향한 것과 동시에 해외입양 아동 역시 전략적 입양의 형태로 해외로 이주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입양 절차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인구 억제 정책의 하나로 1962년에 시작한 한국의 가족계획은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수의 인위적 조정을 이루었지만 이는 순전히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정상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도 밖에서 출산된 아동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책임을 손쉽게 해외로 전가시켜,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정책의 지원보다는 국가간 입양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때문에 거꾸로 입양을 촉진시킴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는 2중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1966년 입양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준비를 불러 일으켰다.¹⁵⁾ 이미 한국에서의 해외입양을 주도하고 있었던 홀트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되었고 해외입양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더불어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이라는 반공주의 기독교 선교기관을 토대로 한 동방사회복지회는 한국에서 약 6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이는 70년대 세워진 후발주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정부조직인 ‘한국아동양호회’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1961년에 민간기관인 ‘대한양연회’로 이름을 바꾸고 입양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기독교인 회장과 장로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해외입양기관들은 ‘모든 아동에게는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로 그들의 사회적 실천에서 타당성을 찾는다.

15) 국외입양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인정한 3개의 기관만이 입양을 보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불리는 혈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를 벗어나 시설이 대신 보호자가 됨으로써 아동이 어느 나라로 갈 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3개의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이다. 한국사회봉사회는 2011년부터 국외입양을 중지하였다.

1970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필두로 정부의 감시 없는 국가간 입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미국 내 한국출신 입양아의 수치는 전체 한국출신 이민자들의 약 13%까지도 차지한 적도 있었다.¹⁶⁾ 국외입양은 단순히 법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별다른 수적 제재 조치 없이 입양을 단행할 수 있었다. 1970년대 국외입양의 체제가 정비된 상태에서 줄어드는 혼혈아동의 수는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혼외아동들로 그 수를 대체되었다. 기독교의 이성에 결혼중심주의 안에서 혼외자는 요보호 아동으로 분리되었고 그들은 국가적 보호를 벗어나 손쉽게 입양의 대상이 되었다. 가부장제 안에서 가족제도 안에 포섭이 되지 않는 여성과 아동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 약자로 변환된다. 결국 국가와 그들이 태어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은 젠더에서 발생하는 권력에서 빗겨나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로 전락한 여성과 아동은 권력관계에서 밀려나 이동(displacement)되고 양육할 혹은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¹⁷⁾

이와 동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입양에 있어서 수적 증가 이면에 부정적 영향 혹은 빈번한 실패가 있음이 조금씩 국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마침내 국내입양의 부양을 위해서 1961년에 세워진 <고아입양특례법>은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고아’라는 용어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길을 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 시기는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에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입양기관들은 혼혈아 대신에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로 그 수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가간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약 90%가 미혼모의 자녀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해외 입양된 11,447명 중 오직 8명의 아이들만이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보내졌다.(표1 참조) 가족제도 안에 포섭이 되지 않는 여성과 아동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 약자로 변환이 된다. 이런 노골적인 입양의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자각의 움직임이 인터뷰들을 통하여 포착된다.¹⁸⁾

16) Soon Ho Park(1995).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17) Birthmother Syndrom은 아이를 입양 보낸 후 겪게 되는 사후 증후군을 말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증후군으로 자녀를 입양보낸 박탈감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18) 정부가 국가간 입양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입양정책에 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간 입양아동의 수치는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자각 또한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국외입양현황(1958~2013)

'58-'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6,677	1,190	1,932	2,725	3,490	4,688	5,302	5,077	6,597	6,159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5,917	4,148	4,144	4,628	6,434	7,263	7,924	8,837	8,680	7,94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6,463	4,191	2,962	2,197	2,045	2,290	2,262	2,180	2,080	2,05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443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1,26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250	1,125	1,013	916	755	236	165,603			

(출처: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이는 입양 당사자인 아동은 배제된 상황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와 근대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위에 이타성을 가장한 계몽주의 정신이 결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대적 실천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은 국가 경쟁력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아버지의 부재는 곧 사회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최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아버지로의 인계로 종결 짓게 된다. 한국사회 안의 강력한 혈연주의와 가부장성 그리고 원초적이며 배타적 민족주의 안에서 길들여진 소수자에 대한 무(無)배려 혹은 제거적 조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양부모 환타지'를 그려내며 '경제력 없는 한국의 미혼모'들을 설득해 왔다.

이 후 한국정부는 1980년에 들어와 이민확대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입양을 전면 개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80년대 중반에는 한 해 8000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다. 이는 하루에 적게 최소 21명이 입양되었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도 국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5년 국외입양 전면 중단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패하였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의 여론이 한국에 집중되면서 국외입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정부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입양정책을 다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외입양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장애아동과 혼혈아동의 입양을 제외한 국외입양을 중단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1995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2005년까지 7차례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입양을 발생과 원인을 넘어 입양 수단 자체에 집중하여 입양활성화에 집중한 시기이다. 이것이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의 4기에 해당한다.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 김근태장관은 5년 안에 해외입양을 없애겠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2007년 ‘해외입양 쿼터제’를 시행하여 인위적으로 10%씩 국가간 입양 아동의 수를 줄여가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는 없었지만 정책적으로 국가간 입양을 억제함으로써 인하여 정부의 (매우 미묘하지만) 반성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했고 정부도 국가간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입양은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었다. 2007년 ‘해외입양 쿼터제’ 시행을 기점으로 입양의 5기로 명명할 수 있겠다. 5기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들이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자녀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미혼모의 권익옹호 활동들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재고와 귀환 입양인에 대한 각성이 일기 시작한다.

2011년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입양특례법>(입양촉진법이 다시 특례법으로 수정되었다)은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시민단체와 입양인 당사자 조직 운동의 결과이며 한국의 해외입양 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입양이 되어서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다른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온 입양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법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한다. 해외입양의 절차에 있어서 직접적 참여자인 입양부모, 입양기관, 아동 이 모든 절차의 중심에 아동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모든 입양 절차에 대한 평가는 아동이 성장한 후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입양이 주체를 은닉한 상태에서 추측과 가정으로 구성된 절차로 이루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시화 된 아동의 주체성은 입양이 된 후에도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화 과정 가운데 국가간의 입양은 성장하고 견고해져 왔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해외입양인(잠시 방문한 사람이나 영구 귀국자나)은 국가의 일방적 결정과 전략적 정책 실천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집단 중의 하나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은 근대국가 형성 시기의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이다.

V. 나가는 말

입양을 둘러싼 많은 주체와 그들의 주장과 또한 각각의 담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아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양이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줘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담론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입양이 ‘좋다’ 혹은 ‘나쁘다’가 글의 주장이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입양이 단순히 설명되는 것과 같이 순수하게 ‘아동의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특별히 국가간의 입양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정책과 국제관계 그리고 종교와 시대적 담론과 같은 복잡 미묘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실행되어 온 입양의 절차에서 삭제되어 온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고아가 미혼모의 자녀들도 대체되고, 전통적 보호자(혈연관계 부모)에서 시설이 대체된 보호자가 되는 가운데 아동의 목소리는 비가시화되고 배제된다.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동은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갈 지 혹은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사람과 입양이 되는 아이는 입양을 성사시키는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결정적 변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아동들은 입양의 주체로는 언급 되지만 주체성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저 마음 좋은 사람에게 맡겨지기를 바라는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의 입양된 아동을 이주의 한 범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장소를 박탈 당했다는 의미로 ‘displacement’로 해석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그 권력 양상을 재편되고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입양은 빈곤한 아동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 이면에 자신이 출생한 국가로부터 책임이 개인으로 전가된 것이고 종교적 실천과 불임부부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실천에 도구적 활용이 되었을 수도 있다.

기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뒤에는 다국적 회사의 이익에 따라 ‘제3세계’ 여성들의 등골 위에 낡은 식민지 시대의 지도가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⁹⁾ 입양형태로 이루어진 세계적 아동의 이동이나 한국의 국외 입양의 역사는 스피박의 주장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무엇을 생략하여 왔고 누구를 희생하여 왔는지 잘 보여준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아동의 입양 역사 위에 허물어진 한 국가의 포기된 성원으로서의 권리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외 입양인이 성장하여 한국에 돌아왔을 때(물론 모든 입양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19) 스티븐 모튼, 『스피박 넘기』, 이운경 옮김, 엘피. P.12

그들은 이미 언어와 문화에서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을 다시 동포로 소환함으로써 결속을 꾀하려 한다. 그들을 동포로 부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실상 그들이 '다름'이나 '차이'로 존중되어 온 것이 아니라 차별 받는 존재로 간주되어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들을 외면하고 '타자화'시키면서 누렸던 특권들에 대하여 되돌아 봐야 한다.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는 말하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말하는 주체와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주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임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입양인들이 입양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국사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회가 된다면 입양의 과정에서 생략된 주체성을 성인이 되어 돌아온 이들에게 미비하게나마 회복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역.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그린비.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파주: 돌베개.
- 박경태. 2013. “사라지는 혼혈인.”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오월의 봄.
- 방인식. 2013. “토마스 클레멘트의 입양 네러티브를 통해 인생 되돌아보기.” 『한국현대영 어영무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스티븐 모튼. 2005.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서울: 앨피.
- 스티븐 카슬 · 마크 J. 밀러(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2008.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고양: 소나무.
- 엘레나 김. 2004.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인가?: 한국 입양 50주년을 기억하며.” 『2004 사단법인 해외 입양인연대: 세미나 자료실』. G,O,A,L(Global Overseas Adoptees).
- 연합뉴스. 2012/10/10. “〈국외입양의 그늘〉 ③관리강화 불구 부작용 여전.” 『연합뉴스』. (출처: <http://goo.gl/OMwBFG>).
- 재외동포재단. 200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국외 입양인 백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토비아스 휘비네트. 뿌리의집 역. 2008.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고양: 소나무.
- 캐서린 조이스. 2014. 박준영 역. 『구원과 밀매』. 뿌리의집.
- Altstein, Howard and Rita J. Simon, 1990.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Perspective*. Praeger Publishers.
- Bagley, Christopher and Loretta Young Anne Scully. 1993. “Inter-country adoption: History and Policy formation,” *Inter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s*. Athenaem Press.
- Soon Ho Park. 1995.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4), 411-428.

International Adoption and Child Migration

Han, Seunghee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As a member of the Nation-State, inter-national adoption is a very significant issue in a personal history as it required to acquire a new nationality from receiving countries but extinct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here the child birth.

The child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n the adoption procedure among two others, adoptive parents and adoption facility. However he/she is not able to practice their subjectivity. That means adoption procedure itself is making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visible and leave the adoptees' life on the hand of his/her adoptive parents. Therefore this paper is tried to explain a blind spot of adoption procedure through the concept of 'migraton' and 'displacement.

〈Key words〉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Migration, Subjectivity, Displacement